안녕하세요. 수성윤정실버타운입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이제 곧 6월 15일이 다가오니만큼,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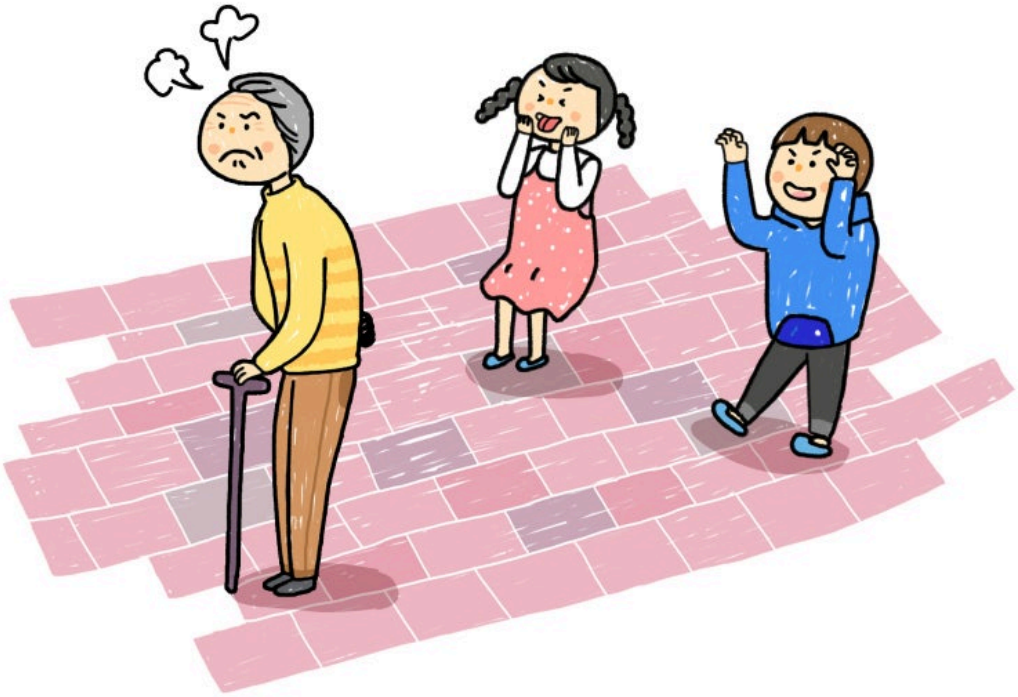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안힉대의 예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로 모아보았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힘 또는 폭력으로 억압, 적법한 절차 없는 신체 제제 및 격리, 식사, 음료, 약물 등의 단절,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 등이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위,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사회활동, 취미여가활등을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노인에게 옷을 입히지 않거나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기저귀 찬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 등이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것, 공적부조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헌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물품강매 등)으로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 등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의복, 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가 유기에 해당합니다.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고의로 두고 오는 것,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키는 것 등이 유기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노인학대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 사용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이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그리고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수성윤정실버타운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인권 교육과 지도감독,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